

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: 2022. 11. 10.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2. 11. 11.
- 상정일자: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4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토지정보과장 이 동 기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률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의 신설 (2020.4.7.)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
-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구체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
- 현행 조문의 조항 연관성을 고려하여 순서를 재배치하고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조항 해석의 혼선 방지

나. 주요내용

- 심의사항의 구체화
 - 표준지가격조사·평가에 관한 사항 →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에 관한 사항

- 회의 의결방식 추가
 -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서면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조정
- 법률의 신설에 따라 위배되는 조례 내용 삭제(제10조)
- 조항 순서 재배열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
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에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회의를 안건이 경미하거나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현행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그 밖에 조항 순서를 재배열하고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